

담양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 시설 지원 조례안

「담양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,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6. 1. 27.

담양군의회의장



1. 조례명 : 담양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 시설 지원 조례안

2. 제안 이유

-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대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,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담양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

3. 주요 내용

가.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
나. 안전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-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을 마련 필요

다. 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- 군수는 관계인에게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설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

라. 관계인에 대한 권고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- 군수는 관계인에게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 가능

4. 입법 예고 기간 : 2026. 1. 27. ~ 2. 1.(5일간)

5. 의견 제출

-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-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조례안 : 붙임 참조

□ 의견 제출 서식

의견서

1. 규칙안	담양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관련조문

의견

2. 의견

3. 기 타
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6년 월 일

의견 제출인 주 소

(전화 :)

성명 (서명 또는 인)

담양군의회 의장 귀하

담양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담양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전기자동차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.

가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

나.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

2. “충전시설”이란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
3. “전용주차구역”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.

4. “안전시설”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.

5. “관계인”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

의무자를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담양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담양군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1. 충전시설의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
2.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
3.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
4.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
5.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안전시설 설치 기준) 군수는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해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.

1. 열화상 카메라,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 감시 및 경보설비
2. 물막이판, 충수용 급수설비, 상방향 직수장치, 질식소화덮개, 질식소화돔 등 소화설비
3.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조치

제6조(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) ① 군수는 관계인이 전기자동차등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, 범위, 대상, 점검 등의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.

제7조(관계인에 대한 권고) 군수는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.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군수는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차량 제조사, 충전시설 관리 주체, 유관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